

자체 심사확인업체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방법 [현장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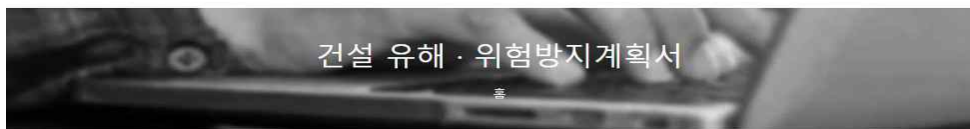
□ 통합관리시스템 접속

○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접속

- 자주 찾는 메뉴 > “건설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” 클릭 ↓



○ 확인관리 > “로그인” 클릭 ↓



○ 로그인 화면 > “사용자 등록” 클릭 ↓



○ 이용약관> 약관 동의 체크 > “동의” 클릭 ↓

건설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 약관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]

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·이용되며,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찾기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공단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☐ 약관에 동의합니다.

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

○ 사용자 등록

① 관리번호 : 현장별로 부여된 ID 입력

※ 관리번호는 자체심사서 제출 시 공단 일선기관에서 부여

② 사업장관리번호 : 산재 가입 시 건설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 입력

③ “확인” 클릭↓

※ 관리번호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로그인 ID로 활용되므로, 잊지 않도록 주의 요함

④, ⑤ “비밀번호” 입력

⑥ “업무 이메일” 입력

⑦ “저장” 클릭↓

사용자 등록

관리번호 *	①	관리지사	
사업장관리번호 *	②	사업장개시번호	
	확인 ③		
회사명		현장명	
현장주소			
비밀번호 입력 *	④	비밀번호 확인 *	⑤
업무 이메일 *	⑥ hotmail로 가입시 스팸메일로 전송될수 있으며 gmail로 가입시 메일전송이 불가능 합니다.		

비밀번호는 영문+숫자+특수기호 9자리 이상 14자리 이하로 입력해주세요.

⑦ 저장

□ 현장별 안전활동 자료 등록

❖ 본사 자체확인 결과* 등록 → 6개월에 1회

* 자체확인결과서 등록

❖ 현장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록 → 2개월에 1회

*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『3대 사고유형, 8대 위험요인 점검표(첨부1)』 활용하여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록

○ 통합지원시스템 자료등록 방법

- ① 왼쪽 목록 중 “월별 자율확인 자료 등록” 클릭↓
- ② “현재주요작업” 입력
- ③ “공정율” 입력
- ④ “실시년월” 클릭↓
- ⑤ “파일등록” 클릭↓
- ⑥ “저장” 클릭↓

유해·위험관리 계획서 현황

대형사고 위험작업

월별 자율확인 자료 등록

심사「조건부 사항」자료 등록

공단 확인 결과 및 개선결과 제출

공지사항

월별 자율확인 자료 등록

년도2023조회

총 0건10개씩 보기

번호	현재주요작업	공정율(%)	실시년월	증빙자료	등록일자	수정일자
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.						

현재주요작업 *

공정율 *

증빙자료 *

증빙자료2

첨부파일은 pdf 형식으로 50MB 이하여야 합니다.

첨부파일은 pdf 형식으로 50MB 이하여야 합니다.

파일등록

파일삭제

파일등록

파일삭제

추가

저장

「추락·끼임·부딪힘」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
사업장 자체 점검표

점검일자 : 2023. . .

■ 점검개요

회 사 명				현 장 명			
점 검 자	(직책)	(성명)		관계수급인	☐ 참여	☐ 미참여(사유:)	
참 여 자	도급인	000 부장	000 과장	*****			
	관계수급인	000 소장	000 반장	*****			

점검 항목		해당 여부	점검결과		조치사항	조치 완료										
			적정	부적정												
< 추락 >																
① 비계	■ 비계상의 안전조치 - (공통) 안전난간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- (달비계)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,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- (이동식비계)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	☐	☐	☐	○ 2층 거실 바닥 자재 반입구 주변 안전난간 설치 ○ 지하주차장 벽체 마감용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설치 등	☐										
	■ 작업발판 설치상태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② 지붕	■ 지붕 위, 안전조치 - 안전난간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	■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(썬라이트 등) 위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③ 사다리	■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- (A형·조경용)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. 경작업, 비계·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				○											
	<table><tr><th>작업높이*</th><th>안전작업 지침</th></tr><tr><td>1.2m 미만</td><td>안전모 착용</td></tr><tr><td>1.2m 이상 2m 미만</td><td>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</td></tr><tr><td>2m 이상 3.5m 미만</td><td>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</td></tr><tr><td>3.5m 초과</td><td>작업발판 사용금지</td></tr></table>	작업높이*	안전작업 지침	1.2m 미만	안전모 착용	1.2m 이상 2m 미만	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	2m 이상 3.5m 미만	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	3.5m 초과	작업발판 사용금지	☐	☐	☐		☐
	작업높이*	안전작업 지침														
	1.2m 미만	안전모 착용														
	1.2m 이상 2m 미만	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														
	2m 이상 3.5m 미만	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														
3.5m 초과	작업발판 사용금지															
* 작업높이 : 바닥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 까지 높이																
④ 고소 작업대 (차)	■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- 안전난간 설치, 안전대 착용,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	■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주행(이동) 금지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⑤ 철골 및 거푸집 동바리	■ 철골 조립·해체시 안전조치* *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(철골 인양·조립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), 안전대 등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	■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* *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, 안전대 착용 등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	■ 거푸집동바리, 데크플레이트 조립·해체시 안전조치* *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, 작업발판 설치 등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		☐	☐	☐	○	☐										

점검 항목		해당 여부	점검결과		조치사항	조치 완료
			적정	부적정		
< 끼임 >						
⑥ 건설 기계·장비,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	■ 차량계 건설기계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양중기의 안전조치* * (공통) 근로자 출입금지, 유도자 배치, 작업계획서 작성, 전조등, 후미등, 후사경, 제동장치, 안전띠 등 * (굴착기) 퀵커플러 안전핀, 후방영상표시장치, 인양작업시 달기구, 작업설명서 확인 등 * (지게차) 백레스트, 헤드가드 * (고소작업대) 과상승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 * (양중기 : 크레인, 이동식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, 승강기) :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 * 기타 :	☐	☐	☐	○	☐
	■ 정비, 보수,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- 전원 차단, 안전블럭·고임목 설치,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	☐	☐	☐	○	☐
	■ 기계·설비* 또는 돌출부의 덮개·울 설치 * (예) 핸드글라인더, 목재가공용 등근톱, 절단기 등	☐	☐	☐	○	☐
< 부딪힘 >						
⑦ 혼재 작업	■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	☐	☐	☐	○	☐
	■ 작업구간,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	☐	☐	☐	○	☐
	■ 작업지휘자, 유도자, 신호수 등의 배치·통제	☐	☐	☐	○	☐
⑧ 충돌 방지 조치	■ 건설기계·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	☐	☐	☐	○	☐
	■ 인양·하역 작업시 부딪힘위험 안전조치 - 인양 유도로프 사용, 2줄걸이 결속, 혹 해지장치 부착 등	☐	☐	☐	○	☐
	■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	☐	☐	☐	○	☐
	■ 건설자재,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	☐	☐	☐	○	☐
< 기타 >						
추락위험	■	☐	☐	☐	○	☐
끼임위험	■	☐	☐	☐	○	☐
부딪힘위험	■	☐	☐	☐	○	☐